

의안번호	152
발의일자	2022. 11. 17.
회부일자	2022. 11. 22.

제336회 도의회 정례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2. 11. 28. (월)

『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』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채 식

『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형식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·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2조)

나.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다. 토종가축 보존·육성 계획 수립을 규정(안 제4조)

라. 실태조사 및 유전자원 보존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5조, 제6조)

마. 경상북도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(안 제7조~제9조)

바. 토종가축 보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규정(안 제10조)

사. 토종가축 및 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
규정(안 제11조)

4. 관련법령

- 「축산법」
- 「축산법 시행규칙」
-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2. 11. 22. ~ 11. 27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06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

-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·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
입 법 사 례	
조 례 명	비 고
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	2021.9.30. 제정
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	2017.12.28. 제정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본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계획수립, 실태조사 등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
-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토종가축”이란 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.
2. “유전자원”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 물질을 말한다.

⇒ 조례에서 사용하는 '토종가축'은 「축산법」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

『축산법』 제2조제1호의2

1의2. “토종가축”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,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.

- * 『축산법 시행규칙』 제2조2(토종가축의 인정 등) ① 「축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, 절차,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⇒ 「축산법 시행규칙」은 토종가축의 인정 범위를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말 및 꿀벌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가축으로 한정하고 있음

⇒ 동물 중 '개'는 「축산법 시행령」에 따른 '가축'에는 포함이 되나 '토종가축'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므로, 본 조례안 정의에 따른 '토종가축'이 될 수 없음

○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보존·관리 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

⇒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
○ 안 제4조는 토종가축 유전자원 보존과 보급 등에 필요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

⇒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안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함

○ 안 제6조는 토종가축의 보존을 위한 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

⇒ 토종가축 종(種) 보존을 위해 난자, 정액 등 유전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

○ 안 제7조는 토종가축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한 ‘토종가축보존위원회’에 대하여 규정함

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협의·조정 사항

1.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⇒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기능을 각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-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10조는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축산농가에게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
⇒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축산농가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음
- 안 제11조는 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
-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우리 경북 울릉도에는 전국 최소(토종가축에 해당)의 약 30% 정도가 사육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주산지임.
- 울릉도는 사라져 가는 우리 소를 지키기 위해 2006년부터 최소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,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한 멸종을 극복하고 토종소의 역사를 이어 나가고 있음
- 이에 따라, 본 조례가 제정되면 최소를 비롯한 경북의 토종가축 사육을 확산하고 그 유전자원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 그러나 우리 경북의 희귀 동물자원인 경산의 삼살개(천연기념물 제368호), 경주의 동경이(천연기념물 제540호), 울진에 주로 서식하는 산양(천연기념물 217호) 등은 본 조례안에 따른 토종가축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

[시행 2015. 12. 29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75호, 2015. 12. 29., 일부개정.]

농림축산식품부(축산경영과), 044-201-2342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, 절차,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.

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말, 벌 등으로 정한다.

제2장 인정기준

제3조(인정기준) ①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(이하 "품종 등"이라 한다)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(한우·재래돼지 : 한국종축개량협회, 제주마 : 제주도축산진흥원)에서 등록한 한우·재래돼지·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인정대상 가축의 추가) ① 토종가축을 사육·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기초축 조성내역(품종 또는 계통명, 시작년도, 조성경위, 외모 특징 등)
2. 품종 등 관리 기록(세대별 혈통기록, 부화 및 입추내역,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)
3. 체중 등 능력 기록
4.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(생산내역, 분양일자, 분양처, 분양 마릿수 등)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·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한다.

제3장 인정 절차

제5조(인정기관)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우·토종돼지 :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
2. 토종닭 :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
3. 토종오리 :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
4. 토종말 :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
5. 토종벌 :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

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. 다만,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.